**문항 1.**

①민감정보수집금지의원칙 : 사상, 신조등개인의기본적인권을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. 다만 예외적으로 민감 정보 역시 법률에 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 있거나,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하다

② 최소수집의 원칙 :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고, 개인정보의 범위, 보유 및 파기기간도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.

**문항 2.**

**디지털 발자국**은 사람들이 PC나 모바일 기기,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긴 흔적들을 말한다.

**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**

**개인정보보호법** -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,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**정보통신망법 -**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